

서울교육대학교와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교육대학교와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은 상호 신뢰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 하며, 본 협약에서 양자를 통칭하여 “양 기관” 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유아·초등 연계 인성교육 모델 개발 및 예비교사 인성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에 대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유아에서 초등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인성교육 모델 연구 및 학술교류
2.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및 예비교사 인성 역량 강화 방안 모색
3. 기타 양 기관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단,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조(협약의 변경·해지) ① 양 기관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일방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1.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협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기관 내부 사정으로 협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4.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4조(비밀 유지 및 손해배상)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 기관의 업무상 비밀 또는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협약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